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대평로1가 31번지 / 전화(02) 731-6258~60 / 전송 731-6056
세무행정과 과장 위정복 담당사무관 김용배 담당자 임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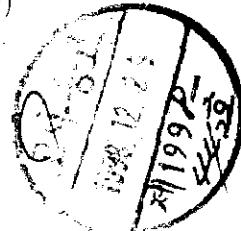
문서번호 세정 13430-1327

시행일자 1998. 12.

(경·유) (제 1 앤)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국장	전봉	기	수
과장	정재	1998.12.5	결재
기안	임정표	평가담당사무관	행정판단부서 1998.12.5

제목 '99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행자부 세정 13430-532('9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99년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임목·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별첨과 같이 결정 시보에 고시하고,

3. "제3안"과 같이 시달하고자 합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2. '99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부

3. 지방세파세표준분과위원회 심의·의결결과 1부. 등.

(제 2 앤)

수신 수신처 참조

제작 '9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시달



1.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임목·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2. '99.1.1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첨부 '99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별도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구 1~25, 세무운영과장, 전산정보관리소장(전산처리과장)

(제 3 앤)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9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의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결정한 '99년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시보에 고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1부 끝.

세 무 행 정 과 장



고 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144호~~

제작일자	1998.12.17	제작번호	제101호
담당부서	기계장비과	제작자	한국환경기술원
제작자	한국환경기술원	제작일자	1998.12.17

199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종합세육시설이용회원권)의 1999년도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12.

서울특별시장

1. 전 명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시행일자 : '99.1.1

3. 결정항목 :

가. 차 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표 ④ 과표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건설기계(기계장비)별 잔가율표

다. 항공기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항공기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표 ④ 시가
표준액 ⑤ 과표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라. 입 목

- ① 용어의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시가표준액 적용
비. 종합세육시설 이용회원권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표준액

4. 세부설명사항

138

서울특별시 세무행정과에 배치하고 있는 물건별 시가표준액과 같음

원보
내조
필

138